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기관 의 장

2026. 8. 31.(월)

고 시

○인천광역시서해구 고시 제153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도로명주소 고시 ——— 1

인천광역시 서해구 고시 제2026-153호

인천광역시 서해구 도로명주소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. 8.31.

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

○ 고시내용: 총 2건(건물번호 부여 2건)

구분	위치	도로명주소	고시일	부여(폐지) 사유	도로명 부여사유
부여	석남동 223-946	봉수대로 303-13 (석남동)	2026.8.31	신축	도로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
부여	석남동 257-24 257-25	건지로109번길 65 (석남동)	2026.8.31	신축	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 약 1.0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해구청 토지정보과(☎560-4830)에 문의하시거나 서해구청 홈페이지(<https://www.seohae.go.kr>)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